

조선 후기 충청도 연기지역의 민장과 갈등 양상

1858년 『사송록(詞訟錄)』 분석을 중심으로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부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jinsim@aks.ac.kr

- I. 민장 연구와 『사송록』
- II. 민장의 현황과 제출자
- III. 민장의 유형과 갈등의 양상들
- IV. 현감의 민장 처리의 특징
- V. 나머지 말

I. 민장 연구와 『시송록』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이란 조선 후기에 민인들이 올린 민장(民狀)과 이에 대한 고을 수령의 처리 결과를 요약하여 모아놓은 책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에 일부 군현의 것들이 소장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존하는 『민장치부책』은 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쉽게도 근대적 행정 및 사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1894년 이전의 것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최근 필자는 『민장치부책』 가운데 대상 시기가 1894년 이전인 9종의 『민장치부책』의 민장 수량을 지표로 하여 당시 소송의 양상과 민인들의 법의식 수준을 개괄적으로 추적해보았다.¹⁾ 필자가 이 같은 시도를 하게 된 배경은 중국 명청 시기가 지금까지의 일반적 상식과 달리 소송이 매우 활발했던 ‘소송사회(訴訟社會, Litigious society)’였다는 일본 교토대학교 후마 스스무(夫馬進) 교수의 최근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후마 교수는 그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정교화하기 위해 청대 파현당안(巴縣檔案)의 방대한 소송 문서를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송(健訟)을 가져온 소송제도의 발전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²⁾

전근대 중국의 법률 전통에 강한 영향을 받았던 조선의 사례를 명청 시기와 비교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과제이므로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민장의 분포, 민장 중 오늘날의 민형사 소송장에 해당하는 소송 건수를 계량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1894년 이전에 작성된 9개 지역의 민장 수량이 한 달 평균 156건에 달할 정도로 민장이 폭주하였고 이로써 조선도 명청 시기 못지않게 소송이 활발하였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³⁾

하지만 선행연구는 민장의 계량적 분석에 치우쳐 각 지역별 특징이나 실제 민장 속에서 민이 제기한 다양한 민원이나 소송의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시론적 접근에 그쳤다. 아울러 소송이

1) 심재우, 「조선 후기 소송을 통해 본 법과 사회」, 『동양사학연구』 123집(2013).

2) 자세한 것은 夫馬進, 「中國訴訟社會論概論」, 『中國訴訟社會史の研究』(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1) 참조.

3) 심재우, 앞의 논문.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판결의 성격, 즉 수령의 처리가 갖는 특징 또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현별 『민장치부책』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사례 분석 및 비교 연구가 절실하다. 이 글은 선행연구에 대한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충청도 연기현(燕岐縣)의 1858년 민장 전체를 대상으로 민장의 건수, 제출자, 민장의 내용과 수령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장치부책』에 대해서는 김선경의 선구적 자료 소개⁴⁾가 있는 이후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민장 연구는 지역 별·주제별 연구라는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장의 지역 사례 분석으로는 전라도 영암과 경상도 영천⁵⁾, 전라도 영광⁶⁾과 순창⁷⁾ 지역의 민장 분석이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특정 지역 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제도와 산송(山訟) 연구과정에서 여러 지역 민장이 선택적으로 발췌, 정리되기도 하였다.⁸⁾ 한편 최근에는 전라도 부안(1901) 및 충청도 진천(1891) 민장치부책에 대한 번역본도 출간되어 민장치부책의 내용 및 지역별 민장치부책의 상호 비교 연구의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⁹⁾

이 글에서 검토한 충청도 연기현 민장치부책은 『시송록(詞訟錄)』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¹⁰⁾ 필자가 충청도 연기지역 민장을 이 글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자료가 비교적 시계열이 충실하다는 점 때문이다. 현존하는 갑오개혁

4) 김선경, 「《민장치부책》 解題」, 『한국지방사자료총서 10 -민장편 1-』(여강출판사, 1987).

5) 김인걸, 「『民狀』을 통해 본 19세기 전반 향촌 사회문제」, 『한국사론』 23(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6) 박명규, 「19세기 후반 향촌사회의 갈등구조 -영광지방의 민장내용 분석-」, 『한국문화』 14(1993); 정승진, 「사회적 모순의 제 양상 -영광 『민장치부책』의 분석-」, 『한국근세지역경제사 -전라도 영광군 일대의 사례-』(경인문화사, 2003).

7) 시귀선, 「광무개혁기의 순창지방 향촌사회 연구 -자료소개와 이를 통한 몇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19·20합집(1997).

8) 김선경, 「『民狀置簿冊』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재판제도」, 『역사연구』 창간호(여강출판사, 1992); 김선경, 「조선 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동방학지』 77·78·79합집(1993).

9) 김선경 번역, 『부안 민장치부책』(부안문화원, 2008); 최윤오·윤김, 『재판으로 만나는 조선의 백성 -충청도 진천 『詞訟錄』-』(혜안, 2012).

10) 도서번호는 한古朝34-33(5책, 필사본)이며, 이 글에서는 『한국지방사자료총서 26 -민장편 9-』(여강출판사, 1990) 영인본을 활용하였다.

이전의 민장치부책은 전라도 영광과 이 글에서 다룬 충청도 연기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개월 치의 분량만 남아 있다. 이에 반해 충청도 연기지역 민장치부책은 1858년 1년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의 민장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1870-1872년 3년분을 담고 있는 전라도 영광지역 자료와 달리 아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¹¹⁾

또 하나, 1858년 『사송록』 외에도 전후 시기에 충청도 연기지역 사정을 보여줄 관련 자료가 추가로 남아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예컨대 17세기의 연기현 향촌 운영상을 보여주는 향안(鄉案) 관련 사료, 1797년부터 1802년까지 충청도 연기현감이 감영에 보고한 보첩(報牒)을 모아놓은 『기양문부(岐陽文簿)』, 광무연간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호적과 양안 등이 대표적이다. 필자의 능력상 이 글에서는 『사송록』 분석에만 그친 한계가 있지만, 향후 이들 전후 시기 지역사 자료를 종합하면 조선 후기 연기 지역사에 대한 충실한 복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당시 연기지역은 동 시기 다른 지역에 비해 민장 제출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렇지만 연기현 민장은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기 민인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결코 소극적이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점을 면밀히 분석하면 중국 소송사회 양상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비교를 수행하기에는 필자의 역량이나 연구 여건이 아직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일단 연기 사례를 충실히 소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조선 후기 사회가 소송이 빈발했다는 입장에 서면서도 현재로서는 선행 민장 연구의 방법론과 성과를 뛰어넘을 새로운 분석틀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시도한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연기지역 민장치부책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한 민장의 내용과 처리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수준에 그치고자 한다. 바로 이 점은 지역 사례의 추가적 발굴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임을 고백한다.

11) 연기현 민장치부책인 『詞訟錄』의 3분의 1 정도는 草書로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II. 민장의 현황과 제출자

연기지역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7개 면으로 이루어진 충청도의 조그만 현(縣)이었다. 분석 대상인 충청도 연기현 민장치부책 『사송록』은 1858년(철종 9)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충청도 연기현감에게 제출된 민장과 현감의 처리 결과를 요약한 책이다. 『사송록』에 수록된 민장의 현황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민장이 제출된 시기, 당시 이를 처리한 현감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사송록』에는 ‘무오(戊午)’라는 간지만 나오며, 『사송록』의 영인본에서 김선경은 민장 작성 연도를 추정했을 뿐 정확한 연도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민장의 전체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다음 두 가지 근거 때문에 김선경이 추정한 1858년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월 10일자 존위(尊位) 장술좌(張述佐)의 민장 가운데 이해 원자(元子) 탄생을 언급하고 있는데¹²⁾, 철종비 철인왕후가 원자를 낳은 1858년과 정확히 일치한다. 아울러 3월 17일 문의현(文義縣) 백성 김성범(金聖範)이 올린 소장에 자신은 경주김씨로 개국공신 계림군(鷄林君) 김균(金菌, ?-1398)의 후손이므로 균역을 물침(勿侵)해달라는 호소에 대해 연기현감 자신도 경주김씨라는 언급이 있다.¹³⁾ 이 또한 『진신외임안(摺紳外任案)』(규 12132)에 김준영(金準永)이라는 인물이 1857년 6월 연기현감에 부임하여 1859년 1월 교체되었다는 기록과 부합한다.

그렇다면 1858년 당시 연기현감 김준영은 어떤 인물인가? 읍지에 연기지역은 음관(蔭官) 종6품 자리로 되어 있다. 또한 『일성록』 기록에 의하면 김준영은 1857년 6월 26일에 연기현감에 임명되었고¹⁴⁾, 이해 12월 11일 충청좌도 암행어사 김익용(金益容)의 서계(書啓)·별단(別單)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특별히 행한 정치가 없다’고 보고된다.¹⁵⁾ 이후 1859년 1월 25일에 모친상을 당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¹⁶⁾ 이상의 기록을 종합할 때 김준영은 경주김씨로 과거가 아닌 음직(蔭職)으로

12) 『詞訟錄』 12월 10일 尊位 張述佐 민장.

13) 『詞訟錄』 3월 17일 金聖範 민장.

14) 『日省錄』 1857년 6월 26일.

15) 『日省錄』 1857년 12월 11일.

16) 『日省錄』 1859년 1월 25일.

1857년 연기현감에 부임하였으나 1859년 모친상을 당해 재임 1년 7개월 만에 현감 자리에서 교체되었으며, 이후 그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직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사송록』은 김준영의 연기현감 재임 1년 7개월 가운데 후반부 1년의 기록이며, 부임 직후의 6개월분과 교체되기 직전 1개월분의 민장은 현존하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자료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사송록』 민장을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먼저 아래 표1은 『사송록』의 전체 민장 제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기현감에게 접수된 민장이 154일에 걸쳐 모두 618건으로 집계되었다. 한 달 평균 51.5건인 셈인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즉,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곳 연기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도 영암(1838, 1839), 경상도 영천(1846), 경상우병영(1862), 전라도 영광(1870-1872), 충청도 목천(1876-1877), 경상도 경산(1879)과 의령(1888), 충청도 진천(1891) 등 9개 지역의 19세기 민장치부책 수량은 한 달 평균 156.3건으로 파악되었다.¹⁷⁾ 이에 비추어볼 때 연기현의 경우 다른 고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인데, 특히 한 달 평균 244.8건이 접수된 전라도 영광지역의 ‘민소(民訴)의 홍수’ 현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민장 건수가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연기현 지역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즉, 읍지에서 연기현의 호구 분포를 살펴보면, 영조대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2,725호, 1만 47구 규모였으나, 1791년 『호구총수(戶口總數)』에서는

표1-민장의 월별 분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민장 건수	46	118	135	67	21	10	-	31	-	57	68	65	618
제출 일수	11	19	20	19	14	7	-	5	-	20	21	18	154

17) 심재우, 앞의 논문, 107-108쪽. 선행연구에서 필자는 연기현 민장을 617건(151일)으로 잘못 집계하였으나 618건(154일)으로 바로잡는다. 아울러 선행논문의 월평균 민장 건수 계산방식도 이 글과 약간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2,502호, 1만 174구, 이후 『대동지지(大東地志)』(1864)에 2,418호, 1만 823구, 『호서읍지(湖西邑誌)』(1871)에 2,501호, 1만 171구로 연기현 호구는 18, 19세기 상당 기간 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적어도 민장 숫자만 놓고 볼 때 당시 연기지역은 충청도의 조그만 농촌 고을로서 갈등이나 청원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일부 다른 고을의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장 건수 자체가 비교적 적었다고 해서 고을 수령의 민장 접수, 처리 부담이 다른 고을보다 훨씬 적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1년 중 154일에 걸쳐 민장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시 연기 관아에서는 수시로 민이 올린 민장을 접수해야 했다. 그만큼 민장 접수 및 처리는 현감에게 일상화된 일이었으며, 당시 민인들은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민장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민장 제출에 제한이 없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칭 시기와 다른 조선시대 군현의 상황이었다.¹⁸⁾

그럼 민장은 언제 주로 접수되었는가? 월별 접수 건수를 검토해보면 2월과 3월에 제일 많은 민장이 접수되었으며, 7월과 9월에는 1건도 없다. 4월 이전과 10월 이후, 즉 농한기에 해당하는 겨울철에 주로 민장이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당시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조선왕조는 농번기에 급하지 않은 사소한 소송으로 인해 농사를 망치는 일을 막기 위해 춘분부터 추분까지는 살인, 강도, 도망노비 문제와 같은 중대 사안을 제외한 잡송(雜訟)을 금지하는 규정을 『경국대전』에 명문화했으며¹⁹⁾, 『속대전』 단계에서는 이에 더하여 흉년에는 추노(推奴), 징채(徵債) 관련 소송도 모두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²⁰⁾ 각 지역마다 이 같은 규정이 지켜졌는지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분석 대상 지역인 1858년 연기의 경우는 현감이 해당 규정을 비교적 잘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8월에도 31건의 민장이 접수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농번기에 모든 잡송을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는

18) 심재우, 앞의 논문, 100쪽 참조.

19) 『經國大典』 권5, 刑典 「停訟」. “外方詞訟 務停後務開前 除十惡奸盜殺人捉獲付官逃奴婢仍役據奪奴婢等 一應關係風俗 侵損於人外 雜訟 并勿聽理 京中則惟恒居外方者聽歸農 其臨決觀勢 欲歸農者 勿聽.”

20) 『續大典』 권5, 刑典 「停訟」. “遇荒年 則本曹取旨 行移該道 凡推奴徵債等項 一切停止.”

점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그럼 민장은 주로 누가 제출했는가? 조선시대에는 민장 제출에 특별히 신분적 제한을 둔 적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구나 민장을 올릴 수 있었다. 이 점 또한 다양한 계층의 민인들이 민소를 거리낌 없이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는데, 연기현에서도 민장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이 올리기도 하고, 면리임(面里任)이나 관속들도 올릴 수 있었다. 1858년 연기 민장에서 이 같은 민장 제출의 개방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표2는 민장 제출자를 제시한 것이다.

표2에서 우리는 당시 연기현에서 대부분의 민장(569건)은 양반, 평민·천민 등 일반민이 제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장의 성격 자체가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아의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민간에서 올린 민장 가운데 일반 민인들이 올린 소장(小狀)의 기재 형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제출자의 이름을 그대로 적은 경우가 있고, '박정언택노(朴正言宅奴) 손이(孫伊)', '유노(兪奴) 춘선(春先)'과 같이 노명(奴名)을 적은 경우도 있다. 앞의 경우는 일반 평민일 가능성이 높고, 노비 이름을 적은 뒤의 경우는 양반을 비롯한 노비 소유주를 의미한다. 조사 결과

표2-민장 제출자

제출자		건수	합계
민간	일반민(양반 포함)	539	569
	승려	1	
	여성	26	
	죄수	3	
아전, 행정 담당	공원(公員)	1	49
	관속(官屬)	15	
	두민(頭民)	1	
	송계(松契)	1	
	역속(驛屬)	2	
	좌수(座首), 존위(尊位)	3	
	동임(洞任), 이임(里任)	11	
	면임(面任)	5	
	형리(刑吏)	1	
	하리(下吏)	1	
	향교(鄕校), 서원(書院) 재임(齎任)	6	
	방축소임(防築所任)	2	

전자의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연기에서도 민장 제출자의 신분은 구애받지 않고 일반 평민도 자유롭게 민장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²¹⁾

표2에서 죄수, 승려, 여성들이 올린 민장이 특히 주목된다. 이 중 옥에 수감된 죄수가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 민장은 모두 3건인데, 그중 2건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석방을 청원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유배형에 병과(竝科)된 장형(杖刑)을 속전(贖錢)으로 대신하고자 그 필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산(先山)의 송추(松楸) 작별(斫伐)을 허락해달라는 호소이다. 이처럼 옥에 수감된 죄수들이 올린 민장의 존재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도 현감에게 민장을 올릴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승려가 올린 민장은 민간인과의 구타사건에 연루되자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임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전체 618건을 놓고 볼 때 절대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민장 제출자 가운데 여성이 26명이나 되는 것도 흥미롭다. 이들을 좀 더 분류하면 과부가 17명, 조이(召史)가 7명, 비(婢)가 2명이다. 과부가 가장 많은데 이들은 가장(家長)인 남편의 사망 등 유고한 상태에서 집안을 대표하여 관(官)을 상대로 청원과 고발의 주체로 민장을 제출한 경우이다. 이 여성들이 올린 민장은 호(戶)에 부과된 백골징포 등 부당한 군포(軍布)나 환호(還戶)의 탈하(顛下) 요청 등 군역과 환곡과 같은 부세 문제에 관한 호소가 중심이며, 그 외에도 투장(偷葬)한 밭자리의 독굴(督掘)을 요청하는 산송, 전답 소송, 입지(立旨) 발급을 요청하는 청원 등 다양하다. 이것은 이 시기 여성들이 자신과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원의 주체로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전이나 면리의 행정 담당인들이 올린 민장은 민간에서 올린 것에 훨씬 못 미치는 49건이다. 이 가운데 동임(洞任), 이임(里任), 면임들의 민장도 보이는데, 동·이·면 단위에 할당된 환자(還上)의 탈하 등 부세 부과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많다. 부세 운영에서 이들의 역할을 짐작케 하는 대목인데, 향교, 서원의 재임이 올린 민장도 역시 부세에

21) 한편 奴婢가 기재된 경우는 대부분 양반 등 노비 소유주가 올린 경우이지만, 간혹 개인적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奴 자신이 올린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관한 것이다. 이 밖에 방축소임은 농사철에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한 방축 공사와 공동 부역을 청원하기 위해서, 두민과 형리는 업무 처리의 결과를 보고하거나 직무 분장과 관련한 청원을 위해서 올린 것이다.

지역 양반들이 직임을 맡은 좌수와 존위의 존재도 보이는데, 좌수가 올린 것은 자신의 직임 교체를 호소하는 내용이고 존위의 경우는 마을을 대표하여 원자 탄생을 기념하는 잔치에 쓸 소고기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한편 표2의 아전, 행정 담당 제출자 가운데 ‘관속(官屬)’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표2에서 관속이라 표현했지만, 이는 실제 민장에 기재된 용어는 아니며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관속이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 15건은 수령의 지시에 의해 다툼이 있는 곳의 형세를 그려 수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산송 도형(圖形) 작성 보고 14건, 수문 도형 작성 보고 1건이다. 당시 연기 관아에서 이들 도형을 만들어 현감에서 보고한 주체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수령 휘하 아전들이 그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므로 편의상 관속이라 이름을 붙였다.

전체적으로 연기지역에서는 일반민을 비롯한 아전, 면리임 등이 모두 민장의 주체로 등장하지만 여성·노비·승려·죄수 등을 포함하여 일반 백성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일부 등장하는 아전과 면리임은 주로 부세 문제나 보고를 위해 관에 민장을 올린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민장 제출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 표3, 표4이다. 표3은 연기 관내 7개 면(面)에서 올린 민장의 분포를 제시한 것이고, 표4는 연기 이외의 여러 고을민이 올린 민장을 군현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표3-연기 관내 면별 민장

면명	읍내 (邑內)	동일 (東一)	동이 (東二)	남 (南)	북일 (北一)	북이 (北二)	북삼 (北三)	미상	합계
건수	12	64	53	100	50	75	82	37	473

표4-연기 이외 지역주민이 연기현감에게 올린 민장

군현명	문의 (文義)	청주 (淸州)	공주 (公州)	전의 (全義)	기타	합계
건수	46	37	27	12	23	145

표3, 표4에서 보듯이 관내민과 다른 고을민이 올린 민장은 각각 473건(76.6%), 145건(23.4%)로 집계되었다. 다른 고을민이 올린 민장의 수 또한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4건 가운데 1건을 타 지역민의 민장으로 보면 된다.

관내 면별로는 남면, 북삼면이 가장 많고 읍내면 거주민이 제출한 민장이 가장 적다. 『호구총수』에 의하면 남면, 북삼면 순으로 호구 수가 많음을 볼 때 표3의 분포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타 지역주민의 존재가 많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연기 인근 고을인 문의, 청주, 공주, 전의 순서이다. 당시 연기현감이 문의와 전의의 겸관(兼官)이었기 때문에 문의현과 전의현 민인들이 민장을 연기현감에게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다.²²⁾ 그렇지만 관내 민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던 그 외의 많은 지역주민이 연기현감에 민장을 올린 것이 확인된다. 표4의 기타는 충청도 관내인 석성(3), 신창(1), 옥천(2), 온양(3), 정산(2), 천안(3), 목천(1), 회덕(1)도 있지만, 강원도 고성(2)과 삼척(1), 한양(2), 경기도 화성(1), 경상도 회인(1) 민인들도 보인다. 비록 그 숫자가 관내민이 올린 것보다 적었지만 연기현감은 지속적으로 타 지역주민이 올린 민장을 접수, 처리해야 했으며, 민인들은 군현의 경계를 넘나들며 피고소인의 관내 수령에게 다양한 소(訴)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충청도 연기현 민장의 현황과 제출자, 제출지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민장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아직 살펴보기 전이라 이른 감이 있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 민장 제출과 관련한 신분적·지역적 제약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관내외 백성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문제를 청원 혹은 호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장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민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였으며, 관의 입장에서든 민인들이 당면한 민(民隱)이나 상호 간의 갈등을 파악할 수 있는 민의(民意)의 수렴 창구였다는 점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제출된 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2) 연기현감이 奎義縣의 兼官을 마무리하는 시점은 이해 5월경이다(『詞訟錄』 5월 20일자 민장 참조). 이에 따라 전의현 민인들의 민장은 6월 이후 사라진다.

Ⅲ. 민장의 유형과 갈등의 양상들

앞 장에서 1858년 연기현 민장의 현황과 작성 주체 문제를 주로 살펴본 있는데, 이 장에서는 당시 1년 동안 연기현감에게 올린 618건의 민장이 어떤 내용과 쟁점을 다루고 있었는가를 검토한다. 민장에 담긴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시 연기현에서 일어났던 분쟁과 갈등의 주요 양상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지하듯이 조선시대 민인들이 수령에게 올린 민장은 단일한 성격의 자료는 아니었다. 민장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나 분쟁에 대해 관의 해결을 요청하는 문서로 고소장 혹은 청원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²³⁾ 당시 수령은 오늘날과 달리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행사하였기 때문에 민형사 소송과 행정 청원 등이 성격상 엄밀히 구별되지는 않았다. 한편 민장치부책에는 민인뿐만 아니라 관속이나 면리임 등이 올린 것들도 있는데, 이들은 민인들과 동일한 형태의 소지(所志)를 올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단자(單子), 문보(文報), 품보(稟報), 첩정(牒呈)의 형태로 수령에게 각종 행정 청원이나 보고를 올렸다. 1858년 연기현 『사송록』에도 여러 가지 성격의 민장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민장치부책에는 민인이 올린 소송장 전문이 실린 것이 아니라 짧게 요약되어 있어 민장 내용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소지의 내용을 때로는 한두 줄로 요약한 경우도 있어 민장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 따라서 이하 민장의 내용 분석에는 편의상 기존 연구의 분류를 참고하여 일부 불가피한 추정을 가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럼 연기 민인들은 당시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그 시급한 처리를 희망하고 있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 연기현 민장을 내용별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 유형화하여 그 월별 분포를 표5에 제시하였다.

표5에서 제시하였듯이 『사송록』에 실린 1858년 연기현 민장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유형화하면 크게 부세 갈등, 상투, 청원·간은, 보고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같은 분류 기준은 당시 목민서(牧民書)에

23) 이에 대해서는 김신경, 앞의 해제(1987) 참조.

표5-민장의 내용별 분포

	민장의 내용				합계
	부세(賦稅) 갈등	상투(相鬪)	청원(請願)·간은(干恩)	보고(報告)	
1월	9	24	10	3	46
2월	21	77	18	2	118
3월	77	46	7	5	135
4월	8	42	14	3	67
5월	1	17	3	-	21
6월	1	5	4	-	10
8월	8	17	4	2	31
10월	18	31	6	2	57
11월	19	40	9	-	68
12월	12	41	11	1	65
합계	174	340	86	18	618

적힌 언급과 민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분류법을 참고한 것이다.²⁴⁾ 먼저 ‘부세 갈등’은 국가의 부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와 호소가 내용의 핵심으로, 이른바 삼정(三政)인 전정·군정·환정이 중심을 이루고 잡세 등 기타 문제도 포괄한다. 이들 민장은 당시 부세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적지 않은 관-민 갈등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상투’는 민인 상호 간의 사회적·경제적 분쟁 및 갈등을 말하는데, 조선 후기의 대표적 분쟁이었던 산송을 비롯하여 전답·가옥 소송, 채대(債貸) 문제, 쟁수(爭水) 및 탈경(奪耕)·이작(移作)·도조(賭租) 등 토지 경작에 관한 갈등, 노비·처첩 분쟁, 형사분쟁에 해당하는 행악(行惡)·구타(毆打), 풍기문란, 무고(誣告) 등을 포괄한다. 이들 민장은 민인들 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대립, 갈등의 모습을 보여준다.

‘청원·간은’은 민인들이 부세 문제 이외에 현감에게 청원하는 것들로서, 관의 공증과정인 각종 입지(立旨) 발급을 요청하는 것에서부터 죄수 석방이나 제언·보 등 수축과 관련한 작인(作人)들의 공동 부역 독려 요청, 소임에 대한 임면(任免) 요청 등 다양하다. 이 밖에 ‘보고’는 관속들이 올린 것으로 산송을 비롯한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단순 보고를 말하는데,

24) 특히 정승진, 앞의 논문의 분석방법을 주로 참조하였다.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으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민장과 거리가 먼 유형이다.

이렇게 유형화한 결과 민장의 내용 분포는 상투 340건(55%), 부세 갈등 174건(28.2%), 청원·간은 86건(13.9%), 보고 18건(2.9%)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민간 상투 문제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다음은 부세 갈등이었는데, 이는 당시 연기현 갈등의 핵심이 사회적·경제적 상투와 부세 문제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연기현 민장에서 상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분류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지역과 차별이 되는 현상이다. 김인걸이 분석한 전라도 영암과 경상도 영천 민장의 분포가 부세 문제(47.2%), 상투(36.9%)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보아도²⁵⁾ 연기현은 이들 지역에 비해 민장에서 부세와 관련한 비중이 낮고 상투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양상이다. 한편 정승진이 분석한 전라도 영광지역의 민장은 상투(45.7%), 부세 갈등(32%)으로 연기현의 양상과 비슷하지만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군 민장에서 상투의 비중이 연기현처럼 절반을 넘지는 않았다. 과연 연기현에서는 어떤 문제들로 민인들 상호 간의 상투가 빈발했는지는 이하에서 살펴볼 중요한 숙제이다.

다음으로 월별 분포와 관련한 흥미로운 부분은 부세 갈등이 3월에 집중되고, 상투와 관련한 민장이 2월에 매우 많이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후술하듯이 3월에는 관의 환곡 분급과 관련하여 환호에서 빼줄 것을 호소하는 민장이 집중적으로 관아에 제출되었는데 부세 문제와 관련하여 3월에 민장이 집중된 것은 이 때문이다. 아울러 2월에는 산송 관련 소지가 특히 많았는데, 이는 상투 관련 민장이 2월에 크게 늘어난 이유이다.

그럼 민장의 내용별로 그 사례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부세 갈등을 둘러싸고 민인들이 올린 민장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6과 같다.

앞에서 부세 문제와 관련한 민장은 전체의 28.2%(176건)에 그쳐 상투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적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연기현에서도 부세 관련 민장의 절대 숫자가 결코 작지 않았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즉, 연기현에서도 부세 운영과 관련하여 관-민 간의

25) 자세한 것은 김인걸, 앞의 논문 참조.

26) 정승진, 앞의 논문, 87쪽 참조.

표6-부세 갈등의 내용

유형	건수	내용
전정(田政)	30	집재(執災) 요청, 결복(結卜) 가징(加徵), 허복(虛卜) 가출(加出), 진전(陳田) 과세(課稅)
군정(軍政)	58	백골징포(白骨徵布), 번전(番錢) 녹징(勒徵), 부당한 군역 책정, 군정(軍丁) 첩역(疊役), 자장전(資裝錢) 부당 징수
환정(還政)	83	환호(還戶) 탈하(頡下) 요청, 환곡 부당 징수
잡역세(雜役稅), 기타	5	포흠(逋欠) 족징(族徵), 기타 부세 문제
합계	176	

마찰이 적지 않았고, 잘못 책정된 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인들의 민원 제기가 잇달았음을 의미한다.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부세 갈등의 핵심은 부세 관련 민장 176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3건을 차지한 환정, 즉 환곡 문제에 집중되었다. 춘궁기에 농민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된 환곡이 부세화함으로써 민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이 시기 지방사회의 피폐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환곡과 관련한 민장의 대부분은 자신이 환곡을 받을 처지가 아니므로 환호에서 탈하해달라는 호소인데, 3월에 59건, 2월에 12건으로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제출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아에서 환곡을 분급하는 시기에 이를 막기 위한 민원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환호에서 탈하해달라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이 가난하여 도저히 환곡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난 외에도 이유는 다양한데 자신이 병신(病身) 이거나²⁷⁾ 갑자기 맹인이 된 것도²⁸⁾ 하나의 사유이며, 군역 부담을 지기 위해 상경한 형을 대신하여 형의 집에 부과된 환자를 탈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²⁹⁾ 동임·이임이나 면임이 해당 동리와 면의 환곡 분배와 관련해 올린 민장도 있었는데, 이사 간 호(戶)의 환곡 배정을 탈면해달라거나 해당 동리에 배정된 환호 수가 실제 존재한 민호(民戶)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환정과 함께 부세 가운데 군역 문제 또한 민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군역은 크게 군포 징수 문제와 군정 징발 문제로 나눌

27) 『詞訟錄』 3월 15일 林奴 日乞 민장.

28) 『詞訟錄』 3월 9일 安生員奴 禮同 민장.

29) 『詞訟錄』 2월 27일 李恂男 민장.

수 있는데, 연기현에서는 대부분 부당한 군포의 징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민인들이 현감에게 민장을 올렸다.

핵심은 이미 죽은 자의 군포를 떠안게 되는 백골징포 문제였는데, 이미 죽은 장인³⁰⁾, 처남³¹⁾, 부친³²⁾, 남편³³⁾, 동생³⁴⁾의 군포가 여전히 장부에 남아서 살아 있는 가족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 밖에도 공신의 후손과 효행 자손으로서 마땅히 균역을 면제받아야 하는데 부당하게 균역이 책정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³⁵⁾, 자신의 집이 승호(陞戶)되어 자장전(資裝錢)의 부과 대상이 된 것이 억울하다는 호소도 여러 건 확인되었다. 이상의 균정 문제가 제기된 시기는 환정과 마찬가지로 3월(16건)에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정 문제는 농사짓는 전답이 재해를 입었으므로 집재(執災) 대상에 넣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많고, 그 밖에 허복(虛卜)에 부당하게 전세를 가출(加出)한 것에 대한 시정 요구, 묘진전(墓陳田)이 진전(陳田) 명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기경전(起耕田)으로 잘못 분류되어 집복(執卜)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요구 등이다. 연기현에서는 1800년에 양전이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전정 관련 민원이 환정, 균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배경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⁶⁾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세 징수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 삼정의 문란상이 연기현에서도 그대로 노정되어 있었음을 민장이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들 부세 운영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민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고려한다. 부당한 부세 징수에 대해 연기현 민인들은 의견 개진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부세 청원 관련 민장의 비중이 작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연기현에서 가장 많은 갈등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인 사회적·

30) 『詞訟錄』 3월 6일 趙判書宅舍音 金壬午 민장.

31) 『詞訟錄』 11월 24일 金錫柱 민장.

32) 『詞訟錄』 3월 29일 尹法貴 민장.

33) 『詞訟錄』 2월 19일 崔召史 민장.

34) 『詞訟錄』 4월 25일 梁成玉 민장.

35) 전자는 『詞訟錄』 3월 17일, 20일, 26일자 민장에, 후자는 『詞訟錄』 10월 9일자 민장에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36) 『岐陽文簿』에 관련 내용이 등장하며, 이에 대한 분석은 이영훈, 「광무양전에 있어서 〈時主〉 파악의 실상-충청남도 연기군 광무양안의 사례분석」,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민음사, 1990), 97-102쪽 참조.

표7-상투의 유형

유형	건수	내용
무고(誣告)	4	각종 무고·무소
산송(山訟)	181	투장(偷葬)·암장(暗葬), 금장(禁葬), 투총(偷塚) 미굴이(未掘移), 장례 방해, 금송(禁松), 송추(松楸) 무단 작벌(斫伐), 산지(山地)·시장(柴場) 소유권 다툼
쟁수(爭手)	11	수문(水門) 다툼, 제언·보 관개(灌溉) 다툼
채대(債貸)	20	채전(債錢) 추급(推給), 우가(牛價)
풍기문란	5	잡기(雜技), 유인(誘引)·통간(通姦), 무녀(巫女)
전답·가옥	34	전답·가옥 소송, 환퇴(還退)·전당(典當), 이중매매, 개간전(開墾田) 추심(推尋)
탈경(奪耕)·이작(移作)·도조(賭租)	6	부당한 탈경, 이작 방해, 도조 추급
재물·기타	39	재물 추급, 재물 절취, 기타 경제적 갈등
행악(行惡)·구타(毆打)	24	구타·능욕, 행패·패악, 모욕·야료
노비·처첩	14	노비 추심, 노비 능탈(勒奪), 속량(贖良) 문제, 처첩 추심
합계	338	

경제적 상투의 유형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이 유형의 민장은 촌락 내부 민인들 간의 소소한 분쟁에서부터 민형사상 제반 소송에 이르기까지 당시 민-민 간의 갈등 양상이 잘 드러난다. 이 유형의 민장은 표7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산송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외에 재물·기타, 전답·가옥 소송, 행악·구타 문제, 채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소송으로, 18, 19세기에 크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산송이다. 이 시기 산송이 빈발했음은 다산 정약용의 언급에서도 확인되는데, 그는 『목민심서』에서 당시 구타와 살상(殺傷)사건의 거의 절반이 산송 때문에 발생한다고 적고 있다.³⁷⁾ 그의 말이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산송이 지방사회에서 큰 논란이 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연기현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사송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기현에서 산송 민장은 상투 전체 338건 가운데 181건(53.5%)을 차지하여 절반을 넘고 있으며 『사송록』 전체를 놓고 보아도 단일 민원 주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37) 다산연구회 역주, 『譯註 牧民心書』 IV, 刑典 제1장 「聽訟」 下(창작과비평사, 1984), 278쪽.

그럼 산송의 전개 양상은 어떠했나? 당시 연기현에서 벌어진 산송의 유형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뒷자리를 둘러싸고 전개된 투장·암장·금장 문제, 투총(偷塚)을 기한 내에 파내 가지 않는 행위를 신고하고 관에서 독굴(督掘)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 산지의 점유권을 주장하며 부당하게 타인의 입장(入葬)을 막는 행위에 대한 고소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산송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산림 소유권과 관련한 다툼도 적지 않았는데, 자신이 금양(禁養)하는 산지의 송추(松楸)를 타인이 무단으로 작벌(斫伐)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산지(山地)와 시장(柴場)의 소유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정소(呈訴) 등이 그 예이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민장치부책에는 민이 올린 민장을 요약해놓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산송의 경우도 그러하였는데 연기현 산송 민장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묘지를 둘러싼 다툼이 훨씬 더 많지만, 산림 이용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위해 올린 민장도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이 시기 산송의 양상이 대개 그렇듯이 연기현에서도 수령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소를 제기하거나 감영에 의송(議送)을 하는 등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컨대 소송이 20여 년을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³⁸⁾, 패소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이에 불복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³⁹⁾, 족인(族人)들끼리 상송(相訟)하는 경우도 있었다.⁴⁰⁾ 또한 산지의 소유권 문제는 개인적 대립에 그치지 않고 분쟁 대상자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후술하듯이 등장(等狀)의 형태로 제출된 산송 관련 민원은 족인 간의 대립, 문중 간의 대립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월에 가장 많은 민장이 제출되었지만 그 외의 달에도 산송 민원이 계속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산송사건은 한마디로 연기현감이 처리해야 할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전답·가옥 소송인데 전답 관련 소송이 중심이다. 일반적인 전답 매매 관련 분쟁 외에도 전답 매매 후 환퇴(還退)해주지 않는 문제를 호소하거나, 이중매매(二重賣買)로 피해를 본 사실을 고발하는 내용, 그리고 진전(陳田)의 당초 소유주가 이를 개간한 자에게서

38) 『詞訟錄』 1월 18일 洪龜烈 민장.

39) 『詞訟錄』 12월 12일 申成顯 민장.

40) 『詞訟錄』 4월 29일 安仁錫 민장.

땅의 추심(推尋)을 관아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농지의 경작과 관련해서는 농수(農水) 확보가 중요한 현안 중 하나였다. 이를 둘러싼 쟁수(爭手) 문제가 2, 3월에 여러 건 민원으로 제기되었는데, 수문의 확보를 둘러싼 대립, 제인·보의 관개 다툼과 관련이 있다. 이앙기물 확보과정에서의 다툼이 때로는 양반과 상민 간에도 발생하여 이 과정에서 상민이 양반을 능욕했다는 이유로 엄장(嚴杖) 20대에 처해지는 일까지도 생겼다.⁴¹⁾ 한편 탈경·이작·도조는 답주(畓主)와 작인(作人) 간의 농지의 경작권을 둘러싼 분쟁, 농사를 마친 후 도조(賭租)의 추급(推給)을 둘러싼 갈등이다. 그러나 연기현에서는 그 사례가 많지 않아서 6건에 불과하다. 이 중 탈경·이작 관련 4건은 모두 3월 농사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다.

각종 채전(債錢)의 추급을 둘러싼 분쟁도 20건에 달했는데, 이는 채무 불이행을 호소하는 민원, 혹은 농우 등을 구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 등이다.

한편 행악·구타 관련 형사사건 청원도 24건에 달했는데, 개인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한 경우이다. 이들 사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양반이 상민에게 모욕과 구타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3건이나 발생했으며⁴²⁾, 승려와 양반의 다툼도 1건 있었다.⁴³⁾ 양반·상민 간의 갈등과 상민의 양반에 대한 범분(犯分)행위는 상하 신분질서가 차츰 부정되고 있는 한 모습을 반영하는데, 신분과 경제적 상황이 불일치해가면서 이런 일들은 종종 빚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⁴⁴⁾

또한 잡기(雜技), 통간(通姦), 무녀(巫女) 문제 등 풍기문란 관련 5건, 상대 민인의 무고행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무고 유형이 4건 접수되었다. 이 밖에 노비·처첩 문제, 재물·기타 문제와 관련한 민장도 14건, 39건으로 적지 않았다. 노비·처첩 민장의 대부분은 노비 추심에 관한 것으로 노비의 소유권을 둘러싼 추심이나 속량(贖良) 문제가 쟁점이었다. 각종 재물의 추심을 위한 다툼, 기타 경제적 갈등은 편의상 재물·기타로

41) 『詞訟錄』 4월 9일 安潤容 민장.

42) 『詞訟錄』 2월 2일 洪洙泳, 2월 21일 洪秉昇, 5월 10일 金沙驛 首吏監官 민장.

43) 『詞訟錄』 3월 11일 李奴 萬卜 민장.

44) 『岐陽文簿』, 「丁巳十一月初四日李益采女獄事」에는 1797년(정조 21) 부유한 상인과 빈한한 양반 사이의 갈등이 자살로 이어진 사건을 보여준다. 이 같은 연기현에서의 신분질서의 이완은 19세기에 와서 점차 심화되어갔을 것인데, 『사송록』의 일부 사례는 이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

분류하였는데 그 숫자 또한 적지 않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연기현 민장은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 숫자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상투 관련 민원의 양상을 일별해보면 추론해볼 수 있듯이 산송, 전답송 외에도 여러 가지 적지 않은 다툼이 촌락 단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갈등으로 표면화되어 관아에까지 접수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현감의 처분이 필요한 중대한 사건도 있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개인 간, 동리 간에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었던 사소한 것들도 상당수 눈에 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선시대 제반 갈등을 증재해왔던 전통적인 향약이나 면리 기구, 촌락 공동체 조직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자신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민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관아에 적극적으로 소송장을 제출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부세 갈등, 상투만큼 그 비중이 높지 않았던 청원·간은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8은 청원·간은 형태의 민장 86건을 세부 내용별로 구분해본 것이다. 가장 많은 청원 형태는 역시 각종 사안에 대한 관의 공증을 요구하는 입지 발급(26건)과 관련되었다. 민인들이 현감에서 발급을 요구했던 입지로는 전답이나 산지를 매매한 후 이를 공증해달라는 것이 많은데, 이 중의 하나를 예로 들면 매매문기를 분실하여 이를 대신할 입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⁴⁵⁾ 산송에서 승소한 후 자신의 금양지(禁養地)를 침범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입지로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⁴⁶⁾ 그 외에 벌목 금지에 관한 입지 요청, 속량 후

표8-청원·간은의 유형

유형	건수	내용
공동부역	14	제언·보 수축
벌목 허가	4	선산 송추(松楸) 작벌(斫伐)·방매(放賣)
입지(立地) 발급	26	전답·산지 매매 후 입지, 산송 후 입지, 제사(題辭) 요청
죄수 석방	14	죄수 선처·분간 요청, 체옥(滯獄) 호소
임면(任免), 급유(給由)	4	소임(所任) 교체·탈하 요청, 휴가 요청
각종 청원	24	도우(屠牛) 허용, 진영(鎭營) 교졸(校卒)의 횡포 금지 호소, 각종 지원 요청
합계	86	

45) 『詞訟錄』 11월 22일 朴奴 千石 민장.

46) 『詞訟錄』 4월 16일 俞弘柱 민장.

입지 발급 요청 등이 있다.

또한 수감되어 있는 가족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요구하는 죄수 석방 요구가 14건, 농사철에 필요한 농수 확보를 위한 제언이나 보 수축을 위해 현감이 경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들 공사 참여를 기피하는 작인들에게 수령이 부역을 독려해달라는 공동부역 관련이 14건이다. 공동부역 관련 청원은 주로 1-3월에 집중되었다. 이 밖에 부세 납부나 속전(贖錢) 납부를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선산의 송추(松楸)를 작별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청원, 소임들의 임면·휴가 관련 청원 등도 각각 4건씩이다.

화재를 당한 후 관아에서 복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무너진 분묘(墳墓)의 보수에 대한 지원,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의 결혼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경비의 지원, 원자 탄생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 소고기 지원, 병든 소의 도살 등을 요구하는 사례는 기타 각종 청원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보고 문서는 표9와 같이 18건에 불과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산송사건에 대해 그 분묘 주변 형지(形止)를 그림으로 그려 수령에 보고하는 관속들의 산송도형(山訟圖形)이며, 기타 단순 행정 보고가 4건 있다.

『사송록』은 민장치부책이므로 그 성격상 민인들이 올린 민원이 중심 내용을 이룰 수밖에 없고, 당연히 관속들의 행정 보고는 소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관속들이 수령에게 올린 각종 보고 사항이 본 자료에 나오듯이 1년 동안 18건에 불과했다고 보면 곤란하고, 『사송록』에 실린 보고류는 민인들이 제기한 민원이나 민장에 대해 관속들이 일차 조사하여 수령의 처리를 요청하는 것만 포함되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민장의 내용이 갖는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에 앞서 민장의 형태 가운데 등장(等狀)과 언문(諺文) 소지(所志)에 주목하기

표9- 보고의 유형

유형	건수	내용
산송 보고	14	산송도형(山訟圖形)
처리 보고	4	수문도형(水門圖形), 처리 결과 보고
합계	18	

로 한다. 연기현 민장은 앞서 보았듯이 대부분 민인 한 개인이 올린 것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등장의 형태로 현감에게 제출되었다. 이 외에도 『사송록』에는 여성이 올린 소지 가운데 언문으로 작성된 것이 내용에서 확인된다. 이런 등장과 언문 소지를 정리한 것이 표10이다.

표10에서 보듯이 등장은 모두 46건인데, 전체 618건 가운데 7.4%를 차지한다. 이는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집단적으로 올린 등장은 다수가 삼정 등 부세 관련 민원이었는데, 동리에 배정된 환곡이나 구역의 탈하, 전답의 집재(執災) 요청이 주를 이룬다. 상투에서는 산송이 가장 많았는데 등장 형식으로 올라온 산송은 산림의 이용, 산지 점유를 둘러싼 집단 간, 문중 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것들이 주를 이룬다.

언문으로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지는 묘지 및 산림과 관련하여 과부 이씨(李氏)⁴⁷⁾와 비(婢) 석례(石禮)⁴⁸⁾ 두 여성이 올린 것들이다. 앞서 민장 제출자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연기현에서는 모두 26명의 여성이 민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언문 소지가 단 2건이었다면⁴⁹⁾ 나머지 여성들 상당수는 민장 제출을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조선 후기 지방사회에서 대서인이나 법률 조연자의 존재는 여성이나 글을 모르는 하층민이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민장을 제출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연기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연기현의 1858년 민장의 내용을 일별함으로써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민장의 내용별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민인들이 당면한 절실한 문제, 최대 민원은 민인들 상호 간의

표10-등장 및 언문 소지

	부세 갈등	상투	청원·간은	보고	합계
등장	21	14	11	-	46
언문 소지	-	2	-	-	2

47) 『詞訟錄』 1월 23일 寡婦 李氏 민장.

48) 『詞訟錄』 2월 26일 婢 石禮 민장.

49) 언문 소지는 2건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사송록』의 기록으로는 이를 정확히 정리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통해 2건으로 추정하는 데 그쳤다.

사회적·경제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산송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묘지 및 산림 소유권 다툼은 최고 현안이었으며 격렬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민간 상투 외에 부세 운영과 관련한 갈등이나 청원 또한 주요 현안이었다. 19세기 농민들을 괴롭히던 환곡의 폐단, 군역에서의 백골징포 등 총액제 운영에 따른 수취제도의 제 모순이 민원의 또 하나의 중심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

셋째, 연기는 민장의 수량만 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한 지역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다양한 민인 간의 갈등이 동리와 촌락 단위에서 중재되지 못하고 관아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반상 간의 구타·범분 관련 마찰 사례도 확인되는데, 촌락 공동체의 내부 중재 시스템의 붕괴와 사회신분제의 해이와 같은 19세기 사회변동의 양상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었다.

넷째, 등장 제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집단적 민원 제기도 빈번하였다. 아울러 소송이 백성들에게 비교적 개방적이었고, 글을 모르는 하층민들이 법률 조언이나 대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민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IV. 현감의 민장 처리의 특징

앞선 두 장에서 연기현 민장의 현황과 제출자, 그리고 민장에 담긴 소송·청원 내용을 주요 유형별로 개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민인들이 올린 민장이 현감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검토할 차례이다.

수령의 민장 처리 문제는 당시 민인들이 올린 민장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민장에는 수령의 간략한 제사(題辭)만 적혀 있을 뿐 아니라 한 사안에 대해 여러 번의 민장이 제출된 경우가 많아 해당 사안의 처리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종래의 민장치부책 연구에서 이 부분이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도 그러한 기록상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선에서 그 의미망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민장 처리 담당자로 등장하는 인물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민장이 올라오면 수령은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혹은 처결 내용을 담은 제사로 써서 돌려주는데, 제사 말미에 해당 민장의 실무 처리를 맡은 담당자를 적는 경우도 있었다. 표11에서 보듯이 『시송록』 618건의 민장 가운데 처리 담당자가 적힌 경우는 118건(19%)을 차지하고 있다. 연기현감이 처결자를 1명만 지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표11에서처럼 2명(유향 및 해색, 장민 및 동임, 장민 및 주인)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먼저 지적할 내용은 연기현감이 관아에 접수된 민장에 대해 처리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가 19%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다. 비교 가능할 다른 군현이 많지 않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전라도 영광의 경우 총 7,291건 가운데 3,024건(41.5%)에 담당자가 지정된 것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⁵⁰⁾ 대개 군현에서 수령에 의해 민장의 처결

표11-민장 처리 담당자

	민장의 내용				합계
	부세 갈등	상투	청원·간은	보고	
동임(洞任)	2	4	2	-	8
면임(面任)	1	-	-	-	1
문장(門長)	-	3	1	-	4
병방(兵房)	1	-	-	-	1
서원(書員)	4	1	-	-	5
송계(松契)	-	1	1	-	2
유향(留鄕)	2	15	1	-	18
유향 및 해색(該色)	2	-	-	-	2
이방(吏房)	1	1	-	-	2
장민(狀民)	-	5	-	1	6
장민 및 동임(洞任)	-	2	-	-	2
주인(主人)	-	32	1	-	33
차사(差使)	-	2	1	-	3
형리(刑吏)	-	1	-	-	1
장민 및 주인	-	5	-	-	5
도장(都掌), 해장(該掌)	-	4	-	-	4
창색(倉色), 해색	7	1	1	-	9
수교(首校), 병교(兵校)	-	7	5	-	12
합계	20	84	13	1	118

50) 정승진, 앞의 논문, 20쪽.

담당자로 지정되면 올라온 민소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피고 측을 잡아오는 등의 후속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연기현에서 이들 처리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가 매우 적었다는 것은 『사송록』 기록상의 문제일 수 있다. 즉, 처리 담당자를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올라온 민장 대부분을 별도로 지정된 담당 관속의 재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감이 그 자리에서 처분을 내려 처리하였기 때문에 처리 담당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장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상투에 관한 340건 가운데 84건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평균보다 상회한 24.7%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세 갈등, 청원·간언의 경우는 담당자 지정이 평균보다 밀들었다. 상투의 경우 그나마 담당자 지정을 통한 조사가 다른 내용의 민장에 비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지만 부세나 청원 민원은 그렇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담당 직임별로 보면 면주인(面主人)과 유향이 가장 높은 비율로 등장한다. 주인(主人)이 가장 많은 33건(27.9%)이며, 유향은 18건(15.3%)이다. 하지만 담당자를 2명 지정한 경우, 즉 장민(狀民)과 주인(5건), 유향과 해색(2건)의 사례에 나오는 주인과 유향의 건수까지 합하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커진다. 여기서 민장 처결자로서 면주인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조선 후기 부세 운영과정에서 면리 행정이 강화되면서 면리임의 역할이 증대되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인 외에도 동임(8건), 면임(1건)이 처결자로 등장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또 하나 유향이 주인 다음을 차지하였는데, 이 무렵 사실상 수령의 하부행정 기구로 작동했던 향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⁵¹⁾

주인, 유향 다음으로 관아의 관속들도 민장의 후속 처리를 위한 담당자로 많이 등장한다. 건수는 수교·병교(12건), 창색·해색(9건), 서원(5건), 도장·해장(4건) 순인데, 특히 부세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처결자로 나선 경우가 많다. 예컨대 담당 역할에 따라 환곡의 경우 창색·해색이, 전정에 관한 사항에 서원이 지정된 사례들이 그런 경우

51) 한편 留鄕 가운데는 文義縣 留鄕이 4건 등장하는데, 4건 모두 문의현 백성이 올린 소지의 담당자로 등장한다. 연기현감이 문의현의 兼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현에서 올린 소지 일부는 해당 고을의 留鄕에게 맡긴 것인데, 이는 김선경이 지적한 것처럼 兼官으로서 옆 고을 소지를 처리할 경우 판결의 수행은 그 고을 鄕所에 위임하던 관행으로 보인다. 김선경, 앞의 논문(1992), 153쪽.

이다.

면리임, 관속 외에 민장을 제출한 주체인 장민⁵²⁾을 처리 담당자로 지정한 경우는 조선시대 재판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 때문이다. 당시 민인들이 민원·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 제출, 변론의 책임은 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었다.⁵³⁾ 연기현감의 경우 산송 등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원고가 지목한 것이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붙잡아 와서 대질할 것을 지시하고, 그 처리 담당자를 민장 제출자 본인으로 지목하였는데, 표11에서 담당자로 지정된 장민은 주로 이런 경우들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기현감이 내린 제사를 분석하여 민장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현감의 민장 처리 방향과 대처는 적절했는지를 음미해보기로 한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민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소의 행태로 관아에 제출된 청원·민원이나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였음은 여러 연구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수령의 민장 처리의 중요성이 전보다 한층 강조되었는데, 『치군요결(治郡要訣)』, 『선각(先覺)』, 『거관잡록(居官雜錄)』, 『목강(牧綱)』 등 당시에 편찬된 여러 목민서에서 민소가 폭주했을 때를 대비하여 예측되는 소송을 유형별로 나누어 미리 모범적인 판결 문안을 만들어두었다가 사용할 것을 권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인들의 민장을 한가로운 다툼으로 안일하게 인식하거나⁵⁴⁾, 적극적인 대처가 아닌 고식적인 처리로 일관하는 수령들도 적지 않았다.⁵⁵⁾ 앞서 19세기 전반 전라도 영암과 경상도 영천의 사례를 분석한 김인걸이 수령의 민장 처리가 형식적이고 미봉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⁵⁶⁾, 이 같은 경향성은 이 글에서 살펴보고 있는 1858년 연기현의

52) 狀民은 민장 제출자를 말하는데 '狀者'라고도 하였으며, 주인을 대신하여 노비가 제출한 경우는 '狀奴'라고도 하였다. 여기서는 편의상 모두 '狀民'으로 통일하였다.

53) 이 같은 조선시대 소송제도의 특징에 대해서는 임상혁, 『조선 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참조.

54) 『治郡要訣』(『조선민정자료 목민편』, 6쪽).

55) 다산 정약용은 당시 상당수의 수령이 민장을 접수하면 '査稟(조사하여 보고하라)'이라 題辭하거나, 관속들에게 일임하는 등 그 처리가 미흡함을 비판하고 있었다(『譯註 牧民心書』 IV, 刑典 제1장 「聽訟」 下).

56) 김인걸, 앞의 논문, 246쪽 참조.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파악된다. 이는 연기현의 주요 현안이었던 부세 및 상투 관련 청원에 대처하는 현감의 자세에 그대로 드러난다.

바로 앞 장에서 보았듯이 당시 연기현에서 부세 가운데 민인들의 가장 큰 민원 대상이 된 것은 군포 징수, 환곡 분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부세 압박 속에서 그 해결을 요구하는 민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현감은 상당수의 경우 민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못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군포에서 백골징포 문제의 상당수는 현감이 바로 변통해줄 사안이 아니므로 기다리라는 답변으로 일관한다. 예를 들어 2월 19일자 동이면 최조이(崔召史)가 죽은 남편의 기병 번포를 탈하해달라는 요청에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이니 일단 올해 번(番)은 납부하라고 답한다.⁵⁷⁾ 그나마 작년도 백골징포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으니 참아달라는 제시는 나은 편이다.⁵⁸⁾ 다른 민장에서 현감은 여러 해 전에 죽은 자의 백골징포도 감면받지 못했는데 최근 백골징포를 어떻게 변통하느냐고 반문하거나⁵⁹⁾, 경내 백골징포가 너만의 문제가 아니니 금년은 납부하고 향후를 기다리라고 하여 현재로서는 해결해줄 수 없음을 노골적으로 토로하였다.⁶⁰⁾

환곡도 마찬가지였다. 가난하고 자식이 없어 환곡 지급 대상에서 빼달라는 과부의 요청에 허락해준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며⁶¹⁾, 대개는 환곡을 감당할 수 없다는 민인들의 호소에 대해 7개 면의 사정이 모두 비슷하니 가난하다고 환자를 탈하할 수 없다거나⁶²⁾, 가난하다고 피하면 누가 반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요구를 거절한다.⁶³⁾ 또한 본동(本洞)에서 환곡 문제를 처리하라고 처분함으로써 동리 단위에 서 분배·징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⁶⁴⁾

사실 당시 군현 단위로 할당된 부세를 수령 차원에서 조정할 재량권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들은 민인들의 이 같은 부세 민원에 대처할

57) 『詞訟錄』 2월 19일 崔召史 민장.

58) 『詞訟錄』 3월 6일 趙判書宅舍音 金壬午 민장.

59) 『詞訟錄』 3월 11일 趙福金 민장.

60) 『詞訟錄』 4월 25일 梁成玉 민장.

61) 『詞訟錄』 3월 9일 寡婦林氏 민장.

62) 『詞訟錄』 3월 4일 李斗在 민장.

63) 『詞訟錄』 2월 13일 柳相信 민장.

64) 『詞訟錄』 3월 29일 林瑞基 및 11월 21일 林瑞基 민장.

여지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관련 민원 처리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세 민원 이외에 상투의 중심을 차지하는 산송 문제도 민장에 대한 현감의 처분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곤 했다. 당시 산림의 사점화(私占化)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선 정부는 산지의 공유와 사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 관련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더욱이 산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할 관련 판결 기준이 애매하여 혼란이 가중되곤 하였는데⁶⁵⁾ 연기현에서도 많은 산송에서 이 같은 상황은 그대로 재현되었다.

묘지의 투장(偷葬)·암장(暗葬)과 관련하여 수령이 시비를 가려 처분을 내리려도 이미 판결 난 사항에 대해 재차 패소인이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며⁶⁶⁾, 투총을 파내 가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같은 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⁶⁷⁾, 기한 내에 파 가지 않으며 그 핑계로 칭병(稱病)과 농사일을 거론하는 것도 그 한 예이다.⁶⁸⁾ 현감은 산송을 처리함에 피고를 직접 데리고 와서 대질하도록 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도형을 작성케 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현감의 처분으로 인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원고와 피고가 번갈아가며 여러 차례 민장을 올리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물론 연기현감은 관아에 올라온 상당수 민장의 시비를 변정하고, 민원을 가능한 선에서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민장의 처리과정에서 당시 수령의 제한적 위상이 갖는 행정 및 재판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연기현 『사송록』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더욱이 민형사 소송의 경우 수령의 판결이 즉각적인 법적 강제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요컨대 조선왕조 지방의 전통적 행정 및 사법 체계하에서 19세기 중반 폭발하는 다양한 민원, 청원을 현감 혼자 감당해내기는 버거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65) 이에 대해서는 전경목, 「산송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사법제도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 18호(1997), 6-12쪽 참조.

66) 『詞訟錄』 1월 29일 淸州 趙賢夏 민장.

67) 『詞訟錄』 1월 29일 朴載孝 민장.

68) 『詞訟錄』 4월 10일 姜趾弼 민장.

V. 나머지 말

지금까지 1858년 충청도 연기현 관아에 접수된 민장의 내용과 처리과정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존하는 『민장치부책』 자료가 몇 개월 치의 분량을 수록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1년 치 12개월분의 민장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충청도 연기현 『사송록』의 자료가치는 큰 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자료에 대한 검토는 당시 연기현 민인들이 직면해 있던 고통스런 민은이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으며, 처리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방 재판제도의 특징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민장을 분석하였다.

연기현 민장을 건수, 제출자, 내용, 처리 담당자 등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본 결과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연기현의 경우 동 시기 민장이 활발하게 제출된 다른 지역들에 비해 민장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었으며, 농번기에는 상대적으로 민장 제출이 적고 겨울철인 농한기에 민장이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민장 제출은 양반, 평민, 천민 등 백성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속, 면리임 등도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반 백성 가운데는 여성이나 죄수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관내 민인들 외에도 적지 않은 타 지역민이 연기관아에 민장을 올렸다.

민장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연기현 민인들이 해결을 바라는 중심 내용은 부세와 사회경제적 상투였다. 당시 삼정의 문란상을 반영하여 부세에 관한 것은 대부분 잘못된 부세 부과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었다. 민인들 간의 민형사 분쟁에 관한 상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중심에는 산송이 있었다.

현감이 내린 제사를 분석해본 결과 민장을 제기한 민인들의 민원·청원이 관아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민장의 처리는 대부분 현감이 그 자리에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더욱이 현감의 처분에는 상투적인 언급이 많았는데, 수령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극히 제한되었던 당시의 지역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이 본문에서 검토한 연기현 민장치부책의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이다. 이 같은 연기현의 사례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 시기 지역사정과 소송 및 재판제도 운영의 특징이란 측면에서 거칠게나마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 조선 후기 지역사회에서 송사(訟事)가 일상화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연기현은 민장이 비교적 적은 군현에 속하지만, 민장 제출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인들은 관청 개청일에 언제든지 민장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제출자의 신분적 제약 또한 전혀 없었다. 다만 이 같은 송사의 일반화 현상을 19세기만의 상황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향후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조선왕조 부세제도의 이완을 비롯한 체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민인들의 권리의식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었다. 상투 관련 민장이 비중 있게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당시 민인 상호 간의 사회·경제적 분쟁이 수령에게 적극 개진되고 있었다. 이는 민인들의 분쟁과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국가가 제공한 민소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소송을 활발하게 제기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민인들의 법에 대한 인식과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연결시켜볼 수 있다.

셋째, 민장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관의 처분이 갖는 제약이 명확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군현제 운영의 속성상 민원·소송의 항배가 고을 수령의 태도와 의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 수령의 민장 처리는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도 많았고 판결의 확정성이나 법적 강제력도 약했는데 연기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 후기 수령의 행정적 책임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권한이나 임기의 보장, 전문적 법률 지식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인들의 민원을 수렴, 조정하는 재판관으로서 수령의 역할에 충실하기는 쉽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시송록』을 분석하면서 민장치부책 자료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기록이 매우 소략하여 당시 연기현 민장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소상히 파악할 수 없었다. 민장치부책 자료의 속성상 민장의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소송사회의 제 양상에 대한 고찰은 민장치부책 자료 분석만으로는 완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민장치부책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 자료의 추가적인 발굴·분석,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닌 민장 분석 방법론의 개발은 향후 연구의 시급한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김선경, 「《민장치부책》 解題」. 『한국지방사자료총서 10 -민장편 1-』, 여강출판사, 1987.
- _____, 「『民狀置簿冊』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재판제도」. 『역사연구』 창간호, 여강출판사, 1992.
- _____, 「조선 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동방학지』 77·78·79합집, 1993.
- 김선경 번역, 『부안 민장치부책』. 부안문화원, 2008.
- 김인걸, 「『民狀』을 통해 본 19세기 전반 향촌 사회문제」. 『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 박명규, 「19세기 후반 향촌사회의 갈등구조 -영광지방의 민장내용 분석-」. 『한국문화』 14, 1993.
- 시귀선, 「광무개혁기의 순창지방 향촌사회 연구 -자료소개와 이를 통한 몇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19·20합집, 1997.
- 심재우, 「조선 후기 소송을 통해 본 법과 사회」. 『동양사학연구』 123집, 2013.
- 이영훈, 「광무양전에 있어서 〈時主〉 파악의 실상-충청남도 연기군 광무양안의 사례분석」.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 임상혁, 『조선 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전경목, 「신송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사법제도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 18호, 1997.
- 정승진, 「사회적 모순의 제 양상 -영광 『민장치부책』의 분석-」, 『한국근세지역경제사 -전라도 영광군 일대의 사례-』. 경인문화사, 2003.
- 최윤오 옮김, 『재판으로 만나본 조선의 백성 -충청도 진천 『詞訟錄』-』. 해안, 2012.
- 夫馬進 編, 『中國訴訟社會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1.

국 문 요 약

이 글은 1858년 충청도 연기현 관아에 접수된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인 『사송록』을 분석하여 민장의 내용과 수령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송록』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12개월에 달하는 민장이 온전하게 수록되어 있어 자료 가치가 크다.

연기현은 동 시기 민장이 활발하게 제출된 다른 지역들에 비해 민장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었는데, 분석 결과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겨울철인 농한기에 민장이 집중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점이다.

민장 제출은 양반, 평민·천민 등 백성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속(官屬), 면리임(面里任) 등도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반 백성들 가운데는 여성이나 죄수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관내 백성들 외에도 적지 않은 타 지역주민이 연기관아에 민장을 올렸다.

민장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연기현 민인들이 해결을 바라는 중심 내용은 부세 문제, 그리고 민인들 상호 간의 사회경제적 다툼(相鬪)이었다. 당시 삼정의 문란상을 반영하여 부세에 관한 것은 대부분 잘못된 부세 부과와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었다. 민장 유형 중에는 민인들 간의 민형사 분쟁에 관한 상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산송이 있었다.

현감이 내린 제사(題辭)를 분석해본 결과 민장을 제기한 민인들의 민원·청원이 관아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민장의 처리는 대부분 현감이 그 자리에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현감의 처분은 상투적이며 미봉책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이상 『사송록』 분석을 통하여 당시 충청도 연기현 민인들이 직면해 있던 민은(民隱)이나 다양한 갈등 양상, 그리고 지방 재판제도의 특징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투고일 2013. 12. 20.

심사일 2014. 2. 20.

게재 확정일 2014. 3. 6.

주제어(keyword) 연기현(Yeon'gi-hyeon), 『사송록』(Sasang-rok), 민장(Minjang), 상투(mutual fighting), 산송(burial mountain lawsuits), 부세(tax)

The Minjang/民狀 Documents Generated in the Chungcheong-do Province's Yeon'gi/燕岐 Area, and the Shapes of Conflicts in the Area: Examination of the 1858's *Sasong-rok*(詞訟錄)

Sim, Jae-woo

Examined in this article is a text entitled *Sasong-rok*(詞訟錄, Record of Lawsuits), which was a compilation of “Minjang” lawsuit documents(“Minjang Chibu-chaek, 民狀置簿冊”) that were submitted to the Chungcheong-do province's Yeon'gi-hyeon office in 1858. The contents of these Minjang documents, and how those lawsuits were processed and concluded, are also examined in this article. *Sasong-rok* is currently in custody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submitted Minjang documents from all twelve months of that year remain today, making this text a particularly important and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Yeon'gi-hyeon was a region which witnessed a relatively lower submission rate of Minjang lawsuit documents, compared to the other regions. One thing that should be noted is that in this area the submission of Minjang documents was concentrated in the winter, which was a hiatu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Not only the Yangban figures, commoners and lowborns, but also members of the local office such as clergymen(官屬) and Myeon/Ri-im(面里任) clerks submitted Minjang documents. Even females, jailed prisoners and residents of other areas were able to submit them as well.

Examination of the Minjang documents reveal that issues which were deemed most important by the people of Yeon'gi were tax problems and mutual conflicts[相關]. They wanted illegal or abusive taxation to be corrected, and lawsuits involving conflicts were often related to feuds over mountains used as burial grounds for certain houses(山訟). Orders(題辭) issued by the Hyeon'gam prefects show us that most of the appeals or petitions submitted from the civilians were ‘not granted.’ Most of the Minjang documents were processed by the Hyeon'gam figures, and the prefects' treatment of them were in most cases more like ‘getting rid of it.’

With the examination of this *Sasong-rok*, we can see what kind of issues the people of Yeon'gi had, what kind of conflicts they had with each other, and what w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legal system.